

공인영어성적 듣기점수 적용 제외 청각장애 대상범위 안내

청각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기존 2·3급)과 실질적으로 듣기시험 점수 확보가 어려운 청각장애인을 듣기시험 점수 제외 대상에 포함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 채용에 응시할 수 있도록 어학능력시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어학능력시험 듣기점수 적용 제외대상 기준

- 해당 시험의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으며, 아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
 - ① '두 귀의 청력 손실 80dB 이상(기존 청각장애 2·3급)'인 사람
 - ② '두 귀의 청력 손실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기존 2·3급)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청각장애의 정도가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자

2. 사무기술직 신입사원 채용 어학시험 기준

구분		토익(TOEIC)	텡스(TEPS)	토플
사무직	일반	800	309	91
	듣기점수 적용 제외대상	400	186	45
기술직	일반	700	264	79
	듣기점수 적용 제외대상	350	159	39
장애인 제한경쟁	일반	500	195	56
	듣기점수 적용 제외대상	250	117	28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응시 및 성적이 발표된 국내 정기시험에 한함
(단,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유효기간 만료 전에 사전등록한 경우에는 5년까지 인정)

* 듣기점수 적용 제외대상의 경우 듣기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합계를 적용함

3. 제출 서류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청각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2·3급)으로 등록된 응시자는 진단서 제출 불필요

① (제출서류) 의사 진단서 원본* (의사 소견서 불인정)

* 2022.1.1. 이후 발급된 진단서 원본만 인정 (공무원 시험 기준 준용)

② (발급기관)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 등 청력 상태를 검진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

③ (의사진단서에 반드시 포함될 내용)

- (가) 면제대상 판단 기준 검사방법 ▶ 예시표 표시① 내용
- (나) 장애 정도 및 유형 등에 대한 구체적 진술 ▶ 예시표 표시② 내용
 - * 장애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7호)에 따라 검사
- (다) 듣기점수 제출 제외 해당 여부 ▶ 예시표 표시③ 내용

【 참고 : 전문의 진단서 발급 내용 예시 】

상기인은

- ① 보건복지부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청력 손실과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를 검사한 결과,
- ② 두 귀의 청력 손실이 60dB이상이며,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인 사람으로서
- ③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어학능력검정시험 듣기점수 제외 대상 기준에 해당합니다.

4. 신청방법 및 절차 안내

○ (신청·제출 : 응시자) 원서접수 시 듣기점수 적용 제외 대상임을 선택하고, 유효한 기간 내에 있는 진단서 원본 등을 온라인 채용 시스템에 등록 및 제출

5. 유의사항 등 안내

○ 어학능력시험 듣기점수 제외 기준과 관련해 허위 또는 거짓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를 왜곡하거나 의사 진단서 등을 위·변조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하고, 향후 서울주택도시공사 채용시험의 응시가 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